##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승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46

발의년월일 : 2016년 6월 1일

발 의 자 : 이승로, 김동율 의원(2명) 찬 성 자 : 김정태, 최영수, 양준욱,

> 김선갑, 이상묵, 이성희, 김기만, 김구현, 서윤기, 김광수(도봉), 김진수, 오봉수 의원(12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 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경 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(점·소등 및 영상연출시간)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도록 함(안 제24조).
- 나.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명기구 정비(별표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#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"을 "제21조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"으로 하고, 제23조제1항 중 "제12조에 따른 야간 경관가이드라인"을 "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"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단서 중 "국내외 행사,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"을 "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###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(제22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규 모				
	공공청사				
1. 건축물	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				
	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				
2. 공동주택	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				
3. 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				
4. 공간조명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				
5.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			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、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현 햀 제22조(조명계획의 수립 등) ① 제22조(조명계획의 수립 등)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 구를 신설, 개량, 증설하고자 하 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·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 --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 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 ②、③ (생략) ②、③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좋은빛 형성 관리 등) ① 제23조(좋은빛 형성 관리 등) ①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·관 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 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 기구의 설치·관리기준과 법 시 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 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 ----- 제21조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경관가이드라인-----한다. 제24조(점등 및 소등 운영) 제24조(점등 및 소등 운영) ①、② (생략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건축물, 교량, 구조물 등의 경 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 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 등은 23시 이내로 하며, 미디어 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 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 으로 한다. 다만, 「관광진흥 법」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 광특구와 국내외 행사,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 영하는 곳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③				
		- <u>국니</u>	H외	행사
	관광진흥			
운영학	할 경우에는	<u>-</u>		

④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#### [별표]

#### 개 정 안 현 행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(제13조제2항 관련) (제22조제2항 관련) 구 분 시 설 규 모 구 분 시 설 규 모 1. 건축물 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공공청사 이상의 건축물, 공공청사 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1. 건축물 5층 이상의 건축물 2.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. 구조물 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2.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. 도로부속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 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3. 구조물 시설물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5.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4. 공간조명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5. 미디어파사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6. 미술작품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9조에 따른 장식조명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, 「서울특별시 동상ㆍ기 념비·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심의대상 7. 미디어파사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 장식조명

#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현행「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」는 경관조명의 점 등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, 예외적으로 행사나 관광진흥 목적의 한시적인 조 명시설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점등시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음. 그런데 이번 개정 안 제24조 제3항이 영구시설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점등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- "예상되는 비용이 <u>연평균 5억원 미만</u>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"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

#### 3. 미첨부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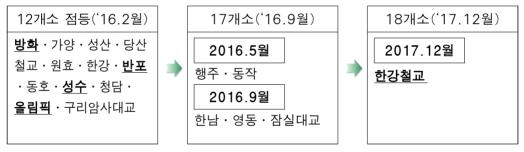
- 가. 비용추계 결과 ≒ 36백만 원
  - 5년간 36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, 연평균 7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합계
יון ט	_	_	1	_	_	_	_
세입	소계(a)	-	1	_	_	_	-
세출	유지관리비(추가 전기요금)	6,051	7,526	7,526	7,526	7,526	36,155
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소계(b)	6,051	7,526	7,526	7,526	7,526	36,155
[	□총 비용(b-a)	6,051	7,526	7,526	7,526	7,526	36,155

#### 나. 전제

- 이번 개정안 제24조 제3항이 영구시설의 경우도 심의를 거쳐 연장 점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관리청(서울시)의 재량사항으로 서울시의 정책변 동에 따라 추계금액의 증감이 발생함(상하 제한 없음)
-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른 경관조명의 점등시간 추가는 서울시 방침서 '한 강교량 경관조명 점등확대 추진계획(2016.3.)'을 근거로 추정함
- 교량별 경관조명 시설용량은 위 방침서 '붙임 1. 한강교량 경관조명 시설현 황'을 참조함
- 위 방침서에 따르면 5개 교량의 점등시간을 현재 23시까지에서 24시까지 로 1시간 늘일 예정이고, '한강철교'는 2017.12월에 설치예정임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전기요금 인상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안함
- 다. 점등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(근거 : 위 방침서)



- ※ 한강철교는 코레일과 사업비 부담, 유지관리 주체 등 협의하여 설치추진. 밑줄 친 교량은 점등시간 연장 예정 교량
- 위 방침서에 따르면 임팩트 있는 도시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는 5개 교량을 선별하여 역사성, 상징성 등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조명에 반영 홍보할 예정 임
- 위 5개 교량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11~4월은 일몰 후 23시까지 점등하고, 5~10월은 일몰 후 24시까지 점등할 계획임
- 라. 점등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전기료 산출(안 제24조제3항) 총 5개교
  - 한강철교('17.12월 설치예정): 8,078원/h
    - = 94.04kWh × 85.9원/kWh = 8.078원/h

- 경관조명 설비용량 추정 : 94.04kW
  - 현재 운영 중인 27개 한강교량의 시설용량의 합 : 2,539kW
  - 평균용량 : 2.539kW ÷ 27개 = 94.04kW
- 점등시간 1시간 연장에 따른 전기료
  - 한전(KEPCO)의 전기요금 가로등 단가('13.11.21.) 85.9원 적용
- 참고로, 경관조명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는 점등시간 연장과 무관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번 비용추계에서 제외함(경관조명을 코레일이 관리할 경우추가비용 미발생)
- 반포대교('16.9월 연장예정): 4,982원/h
  - $= 58.0 \text{ kWh} \times 85.9 \text{ H/Wh} = 4.982 \text{ H/H}$
- 경관조명 설비용량 : 58.0kW
-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 : 85.9원
- 성수대교('16.9월 연장예정) : 8.848원/h
  - $= 103.0 \text{ kWh} \times 85.9 \text{ l/kWh} = 8.848 \text{ l/h}$
- 경관조명 설비용량 : 103.0kW
-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 : 85.9원
- 방화대교('16.9월 연장예정) : 없음
- 방화대교는 신공항하이웨이(주)가 관리 중으로 점등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전기료 부담 없음
- 올림픽대교('16.9월 연장예정): 19.328원/h
  - $= 225.0 \text{kWh} \times 85.9 \text{원/kWh} = 19.328 \text{원/h}$
- 경관조명 설비용량 : 225.0kW
-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 : 85.9원
- 마. 연간 전기료 추가 규모 산정
  -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: 한강철교를 제외한 4개 교량

- 연간 전기요금 추가분 : 6,051,335원
  - = (4,982원+8,848원+19,328원)×365일×6/12월
- 2018년 이후 : 한강철교를 포함한 5개 교량
- 연간 전기요금 추가분 : 7,525,570원
  - $= (8.0788 + 4.9828 + 8.8488 + 19.3288) \times 3659 \times 6/128$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 승 우

사업평가팀장 황 훈

분 석 관 한 기 백